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4월 30일 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4월 22일

나. 발 의 자: 강선영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4. 30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고찬양 의원)

□ 제안이유

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보조급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(안 제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2항

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-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, 강서구에서도 2020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」를 제정하여 제5조1)에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음
- 본 개정안은 **안 제5조의2**를 신설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 정하고, 지원 대상을 구 관할구역 관광 목적으로 제한함

제5조의2(지원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(주최)하는 행사, 회의,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,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
- 2.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
- 3. 그 밖에 구 관할구역을 관광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

¹⁾ **제5조(관광진흥사업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^{1.}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

^{2.}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

^{3.}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

○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예산 낭비 및 목적 외 지원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,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 끝.

붙임 관계 법령

□ 「관광진흥법」

제76조제2항(재정지원)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 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